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0
----------	-----

발의연월일 : 2026년 2월 25일

발의자 : 강수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1.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변경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날짜와 안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며,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을 개정하고자 함. 이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 및 문장 구조를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게 수정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호)
- 나. 정례회 안건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호 및 2호)
- 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제3호)

라. 일본식 표현 및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6. 3. 3. ~ 2026. 3.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사결정에 있어”를 “의사결정을 할 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의회의 의정활동원칙)”을 “(의회의 의정활동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을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고에 의하여”를 “사고로”로 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부의회여야”를 “부쳐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내의”를 “내”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한도내”를 “한도 내”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11월 20일”을 “11월 15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42조”를 “법 제49조제1항
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서울특별
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7호 중 “문란하게”를 “어지럽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② (생략)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3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생략)

제17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생략)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사고로

제11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쳐야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장의 직무 등) ①

내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한도 내

③ (생략)

제18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사무국) ① (생략)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
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사무국설치 조례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
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
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
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생략)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
일에 집회한다.

제26조(정례회의 안건) 정례회에
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
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법 제4
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받아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
칙」-----.

제25조(정례회의 집회일) -----
-----.

-----.

1. (현행과 같음)

2. ----- 11월 15
일-----.

제26조(정례회의 안건) -----

-----.

1. -----
----- 승인 -----

사의 실시 및 그 밖에 지방의 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9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생략)

② 의안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략)

제31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도시건설위원회

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속하는 사항

나. 다. (생략)

4. (생략)

③ (생략)

제57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

-----.

2.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
-----.

제29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삭제>

가. 나.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
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③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7. -----
----- 어지럽게 -----
--

②·③ (현행과 같음)

의원발의 조례안 종합검토 의견서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조례안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조문개정 <input type="checkbox"/> 조문내용 - (목적)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과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사무 현행화,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적용을 통한 조례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 정례회 안건변경 및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변경 · 조례 자구 정비		
관련 법 조 항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소요예산	<input type="checkbox"/> 없음		
부서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검토사항 있다 없다	기타의견
	1. 이미 관련 유사 조례가 있는지?	√	
	2. 발의된 조례안이 행정이나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3. 사업(정책)집행, 예산, 효과 등에 대한 검토여부?	√	
	4.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	
	5.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	
	6. 집행기준 및 행정절차 등이 불투명하여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지?	√	
	7.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	
	8. 기타 법률적 위반사항 등이 있는지?	√	
종합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예산 심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202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구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조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3억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조직개편사항을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구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의회사무국장 박홍진

